지역사회공유·협력규정

2022.04.27.제정 2022.10.25.일부개정 2023.09.01.일부개정

<산학교육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대학”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공유·협력 활동을 위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활동) ① 지역사회 공유·협력 활동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교육처 CareerAction센터로 한다. (개정 2022.10.25., 2023.9.1.)

② 지역사회 공유·협력 활동에 관한 담당부서는 사무분장규정에 따르며, 그 외는 별도로 정한다.

③ 지역사회 공유·협력 활동에 관한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공유·협력에 관한 사항
2. 지역대학 공유·협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공유·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산업체 공유·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기타 각종 기관들과의 공유·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지역사회공유협력위원회) ① 지역사회 공유·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사회공유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원장은 산학교육처장으로 한다.(개정 2022.10.25.)

④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생처장, LINC3.0사업단 공유협업센터장, CareerAction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25., 2023.9.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공유·협력 수요분석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공유·협력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공유·협력 활동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공유·협력에 필요한 사항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연간계획수립) ①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매학년도 초 연간 지역사회 공유·협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간계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역사회 공유·협력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공유·협력 계획
2. 지역대학 공유·협력 계획
3. 지방자치단체 공유·협력 계획
4. 지역 산업체 공유·협력 계획
5. 그 밖에 지역사회 공유·협력 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결과보고) ①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의 결과보고 등을 취합하여 지역사회 공유·협력 활동 결과를 매 학년도 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공유·협력 활동 결과를 대학자체평가보고서에 수록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환류및개선) 주관부서는 지역사회 공유·협력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대학경영방침 및 중장기발전계획, 지역사회 공유·협력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